

일본의 방재기관 업무내용

1988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협회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본의 7개 기관을 방문하여 방재업무개선 및 새로운 업무영역 확대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이것은 방문기관의 업무내용을 개략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1. 일본소방검정협회

소방용기계 등의 시험 및 개별검정과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성능화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自治大臣의 감독하여 다음의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가. 검정업무

소방용기계기구는 일정의 형상 등을 가지지 않을 때는 화재의 예방, 소화, 인명의 구조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한 위험한 기기 등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기 등(검정품목)은 소방법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나. 감정업무, 수탁시험업무

검정품목이외의 소방용기기 등을 의뢰에 의해서 감정(일정한 기술수준의 적합여부 판정), 수탁시험(의뢰자가 요망하는 시험을 하여 자료제공)을 한다.

다. 조사·연구업무

1) 기술상의 규격연구

검정의 적정화, 합리화 및 신개발의 소방기기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소방청의 지도하에 규격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술상의 규격 및 시험, 검사방법의 연구 및 심의를 한다.

2) 신기술 개발에의 대응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의 대응

4) 기타 조사연구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규격, 시험방법등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위해 실용 유효기관의 연구, 성능추적조사, 신품목에 관련된 시험방법의 연구 및 외국문헌 등을 수집한다.

5) 연구자료의 발행

검정업무에 관련된 정보, 소방용기기 등의 조사연구 및 사고사례, 기타 업무전반에 걸친 정보를 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檢定時報”, “研究資料”, “檢定協會소식”을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2. 일본선박품질관리협회, 선박裝品연구소

조선공업은 세계제일의 기술을 가지나 船裝品, 船用品에 있어서는 세계수준에 미치지못해 시험연구의 진흥이 의장품, 선용품 메이커에 요망되었으나 시험연구를 위한 특정한 시설과 인력을 두기에는 한계가 있어 연구소는 우수한 시험시설을 정비, 보유하여 이것을 인적능력과 함께 업계에 개방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가. 수탁시험

선용품, 의장품 등에 있어서 의뢰에 의해 시험을 하여 시험성적서를 교부한다.

나. 시설대여

우수한 시험시설, 기기를 대여하며 이 제도의 활용에 의해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필요한 고급 시험기의 장비구입부담을 업계는 덜게 된다.

다. 시험지도

시설대여와 함께 발생하는 기술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시험연구의 지도와 협력을 제공한다.

라. 개발연구

선용품, 의장품에 있어서 독자적인 개발연구를 한다.

3. 일본방염협회

自治省 소방청의 지도 감독 아래 방염성능시험, 방염 라－벨의 교부, 방염물품의 품질관리 및 방염에 관한 기술향상을 위해 강습, 출판, 방염의 보급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업무

소방법에서 규정한 방염물품 및 행정지도에 의해 사용이 장려되고있는 방염제품의 시험을 한다.

나. 라－벨 교부업무, 품질관리업무

심사에 합격한 방염물품, 방염제품의 라－벨 교부업무를 하며 품질화보를 위하여 유통과정에서의 拔取, 試買Test를 하기도하고 공장의 실지조사도 하고 있다.

다. 강습업무

방염가공업자가 방염가공후 이를 물품에 방염표시를 하기위해서는 방염전문기술 자격을 가진자를 품질관리부문에 두어야하며 자격취득을 위해 강습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라. 홍보업무

방염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가지고록 소비자 단체, 부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시회, 설명회등을 수시로 개최한다.

4. 노동성 산업안전연구소

노동성 부속의 국립연구기관으로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위해 각종 재해 현상의 해명과 재해 방지 기술의 개발 등 광범위한 연구를 한다. 특히 기계설비의 대형화에 기인한 재해,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각종 재해, 화학프랜트 등에 있어서 폭발재해등 행정요구가 높은 중대 재해방지에 중점을 두며 로보트 등의 자동제어 시스템에 있어서의 暴走재해, 고령작업자의 작업행동재해등 최근의 재해동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스템공학, 제어공학, 인간공학 등의 새로운 분야의 연구에도 적극성을 띠고 있다.

5. 위험물보안기술협회

소방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일본 유일의 석유탱크에 대한 중립적 심사기관으로서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심사업무

- 1)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市町村長의 위탁에 의해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저장, 취급 액체의 위험물 최대수량이 1,000㎘이상의 것)의 신설, 변경 및 보안의 심사
- 2) 위험물의 저장, 취급 또는 운반의 안전에 관한 시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제공.
- 3) 위험물의 저장, 취급 또는 운반의 안전에 관한 교육

나. 시험확인업무

1) 소량위험물 탱크의 시험확인업무

市町村의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 수압에 의해 누설, 또는 변형여부를 시험하여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2) 등유용 폴리에틸렌통의 시험확인 업무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제2섬유류, 인화점 40°C이상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폴리에틸렌제 운반용기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3) 방전가공기의 형식시험확인업무

방전가공기의 화재예방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형식시험확인업무를 실시한다.

4) 기타

위험물저장, 취급 또는 운반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의 일환으로서 협회 기관지 발행 및 위험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보안강습회를 실시하고 있다.

6. 건재시험센타, 중앙시험소

콘크리트, 철, 플라스틱등의 건축, 토목에 사용되는 건설재료, 각종의 판넬, 샤시 등의 건설部材및 책걸상, 금고 등의 가구류 시험을 하여 그 성능을 증명하며 이와 관련한 각종의 사업을 한다. 또 통산성, 건설성, 주택도시정비공단, 주택금융公庫, 東京都, 日本海事協會등으로부터 공적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부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업무

의뢰에 의하여 건설재료, 건설부재, 설비부품의 품질 성능을 시험하고 시험결과를 성적서로서 의뢰자에게 보고한다.

나. 조사연구업무

각종의 기업, 관공서, 公團, 公社등의 위탁을 받아 조사연구를 하며 또한 시험이나 표준화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성과를 위탁자에게 제공한다.

다. 지도상담업무

기업 또는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기술적인 지도와 상담을 하기도 한다.

라. JIS원안작성업무

통신성공업기술원의 위탁을 받아 재료, 부재, 제품, 시험방법 등의 JIS원안을 작성한다.

마. 公示검사 업무

전재관계의 검사기관으로 인정되어 있으므로 JIS마크 표시허가공장에 대한 검사가 통신성고시에 의해 고시된때에 이 업무를 한다.

7. 일본전선공업회

내화·내열전선 인정업무위원회를 비롯한 전선관련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관리하며 회원회사는 163개 회사로써 회원사의 회비로 공업회를 운영하며 自主認定제도를 시행하고 있다.